충남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 2. 22.]
개정 2015. 3.12.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건축공학과(이하 “학과” 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석사학위과정 수료이후 1년 이내 논문심사를 신청해야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및 자격요건) 논문제출자격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응시절차)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의 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과목) 자격시험은 전공에 대하여 실시하고, 자격시험의 교과목은 재학 기간 동안 수강한 교과목으로 하며,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
3. (시험출제기준) 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4.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2인 이상을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5. (합격기준) 전공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불합격된 시험에 대하여는 다시 응시할 수 있다.
6. (보고) 계열학사위원장은 자격시험의 합격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논문지도위원회)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단, 전일제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박사학위과정 수료이후 2년 이내에 논문지도위원회를 신청해야한다.

③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전일제 박사과정의 경우 외부심사위원 1인 이상을 외국대학 또는 외국연구기관의 저명학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 본 공개 발표시 소속학과 전임교원을 참석토록 한다.

제6조(외국어능력 기준)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1. TEPS 476점 이상
2. TOEIC 600점 이상
3. TOEFL(CBT) 163점 이상
4. TOEFL(iBT) 57점 이상
5.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6. 단, 위 공인성적을 제출하지 못할 시에 별도의 영어능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어능력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5.3.12.)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① 박사학위과정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으로 SCI급 1건, 국내전문학술등재지 2건 이상, 국제학술발표 2건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반일제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국내전문학술등재지 2건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은 국내전문학술등재지 1건, 국제학술발표 1건 이상을 포함하여 총 2건 이상의 학술발표를 충족하여야한다.

③ 학술지게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논문의 경우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하며, 국제학술발표의 경우에는 발표 또는 공동저자 이상을 인정한다.
2. 지도교수를 공동저자로 포함한 논문만을 인정한다.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4. SCOPUS(Journal) 및 SCI급 논문은 국내전문학술등재지로 인정할 수 있다.
5. 건축계획 전공의 경우, 국내전문학술등재지를 SCI급 논문 0.5편으로 계상한다.
6. 7일 이상의 국제연수를 이행한 경우, 국제학술발표 1회로 계상한다.

제8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03.12.)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능력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세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해 종전 시행세칙을 따를 수 있다.

[별표 1]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구분	반일제	전일제
석사	- 국내전문학술등재지 1건, 국내학술발표 1건 이상	- 국내전문학술등재지 1건, - 국제학술발표 1건 이상을 포함하여 총 2건 이상의 학술발표
박사	- 국내전문학술등재지 2건 이상	-SCI급 1건, 국내전문학술등재지 2건 이상 - 국제학술발표 2건 이상

※ 논문의 경우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하며, 국제학술발표의 경우에는 발표 또는 공동저자 이상을 인정한다.

※ 7일 이상의 국제연수를 이행한 경우, 국제학술발표 1회로 계상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학술지게재 확인표

[건축공학과 OO학위 취득예정자의 논문발표 심의자료]

1. 취득예정자의 인적사항

성 명		OO과정기간	20 . . . ~ 20 . . . (년 개월)		
청구논문제목					
지 도 교 수		전 공 분 야			
현 직 장 명					
부 서		직 위		전 화 번 호	

작성일 : 20 년 월 일
작성자 :

2. 발표논문의 실적요약

구 분	심 사 대 상 논 문 (건)
국 외 논 문	
국 내 논 문	
국외학술회의	
국내학술회의	

3. 논문발표실적

구 분		논 문 명	저널명/ 발표기관	년월	저자명 (순서)
논문지게재	국외				
	국내				
학술회의 Proceeding 게재	국외				
	국내				
기 타 사 항					

4. 특허실적

구 분	특 허 명	등록(출원)번호	등록일	등록자
국내				
국외				

붙임 ; 증빙자료 ○부